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호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의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45조 및 제47조)
-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45조 단서)
- 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안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 라. 각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고등학교에 북한이탈주민이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 등을 학교에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이를 보조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⑤ 통일부장관은 이 영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제46조제4항”을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지원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립 ·공립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사립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제46조제3항 관련)

대상자		지원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립·공립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사립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제2항은 2026학년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u>보호대상자</u> 로 한다. <u><단서 신설></u>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 ----- ----- ----- 대상자----- <u>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한정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u>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u> 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②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

② 통일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이를 보조한다.

④ -----

---- 북한이탈주민-----
-----.

③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삭 제>

⑤ 통일부장관은 이 영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

--- 자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④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0.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3